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9.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고명욱 의원 등 9명
- 발의일자: 2023. 9. 1.(금)
- 회부일자: 2023. 9. 1.(금)
- 검토기간: 2023. 9. 4.(월) ~ 9. 8.(금)

2.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가구의 문화생활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지원대상 및 협약의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통지의 의무 및 환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를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명시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 신체적 불편과 빈곤으로 외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들이 TV 시청 등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달서구 내 65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은 약 1,380명으로 정책대상이 특정되고, 소요비용의 추계 또한 명확하여 정책이 시행될 경우 필요한 비용과 기대효과가 분명하여 정책의 효율성 또한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원 대상을 재가 장애인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¹⁾과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저소득 가구 등 다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과의 형평성이 제기 될 수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다른 지원정책 및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사업 등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 다양한 정책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주민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점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 등을 상위법령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문화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한 상위법령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1)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자는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주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입소가 결정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선정기준은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7% 이하)임.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를 말한다.

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